연구개발관리규정

제정 2012.10.31

개정 2013.10.29

개정 2014.12.03

개정 2015.12.23

개정 2016.12.22

개정 2019.11.14

개정 2020.03.25

개정 2020.07.01

개정 2021.12.28

개정 2022.11.08

개정 2023.11.16

[신에너지연구원 042-600-8226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에너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(이하 "에너지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1. "연구개발"이라 함은 과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, 연구, 실험, 개발 등을 말한다.
- 2. "연구책임자"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11.>
- 3. "연구개발주관부서장"이라 함은 공사의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을 주관으로 하는 부서의 장(처,실,센터장)을 말한다.<개정 2014.12.03>
- 4. "연구전담인력"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연구원을 말한다.<개정 2014.12.03>
- 5. "위촉연구원"이라 함은 연구업무 수행을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한 일정자격의 근로자를 말한다.
- 6. "연구계획서"라 함은 실시 예정인 연구과제의 시행계획을 기록한 계획서를 말한다.<개정 2014.12.03>
- 7. "지적재산권"이라 함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.
- 8. "연구개발주관부서"라 함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연구개발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,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<신설 2014.12.03>
- 9. "수행부서"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<개정 2016.12.22>
- 10. "연구노트"라 함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·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

-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.<신설 2014.12.03>
- 11. "공모연구과제"라 함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.<신설 2016.12.22.>
- 제3조(연구개발의 구분) 연구개발업무는 연구과제 수행방법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4.12.03>
 - 1. "자체연구"는 공사에서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하며, 공모연구와 수시연구로 나눈다. <개정 2014.12.03>
 - 2. "위탁연구"는 공사가 연구과제 또는 과제의 일부를 국내외 연구기관, 산업체,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.<개정 2019.11.14>
 - 3. "공동연구"는 공사와 국내외 연구기관, 산업체, 교육기관 등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말하다. 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>
 - 4. "수탁연구"는 정부 및 국내외 외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공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하며, 정부수탁연구와 일반수탁연구로 나눈다.<개정 2014.12.03.>
 - 5. "협력연구"는 연구협력을 목적으로 필요할 때 국내·외 대학교, 학회 및 연구기관 등 협약에 따라 공사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.<신설 2020.03.25>

제 2 장 위원회 운영<개정 2016.12.22>

제4조(연구개발심의기구) 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 정 2016.11.22.>

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심의위원회<신설 2016.12.22.> <개정 2021.12.28>
 - 1. 구성
 - 가.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주관부서의 본부장 또는 단장으로 한다.
 - 나.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장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본사 처, 실, 센터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(외부전문가 포함) 한다. 단, 공모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과제 최종평가시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내 위원수(심의위원장 제외)와 동등 또는 이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며, 과제 제안자가 소속된 해당부서(처, 실)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배제한다. 심의사항이 기술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배제할 수 있다. 외부전문가의 평가료 지급기준은 연구개발관리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.07.01.> <개정 2021.12.28.> <개정 2023.11.16.>

.>

- 다.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개발 전담자 중 부(차)장 급으로 한다.
- 라.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회 참여를 금지한다.<신설 2020.07.01.>
- 마. 외부전문가는 회의 참석에 앞서, [별지 제5호 서식]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[별지 제6호 서식]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심의의 공정성을 다하며 대리참석을 금지한 다.<개정 2021.12.28>

2. 운영

- 가.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나.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다.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 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.> <개정 2023.11.16.>
- 라.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[별지 제4호 서식]으로 부의안건,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.>
 - 1)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
 - 2)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
 - 3)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23.11.16.>
- 마. 심의위원회 부의사항 및 회의록은 [별지 제1호 ~ 제3호 서식]을 활용하여 관리한다. <신설 2019.11.14>
- 바. 위원장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, 미리 지명한 직무대행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정비사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신설 2019.11.14.>
- 사.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7.01>
- 아. 위원장은 회의록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함으로써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7.01>

3. 심의사항

- 가. 이사회 부의사항
- 나. 연구개발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다. 공모과제 선정, 연구과제 참여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
- 라.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
- 마.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
- 바. 협력연구분야 선정 및 예산범위에 관한 사항<신설 2020.03.25>
- 사.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아. 연구과제의 중대한 변경사항

- ② 실무위원회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>
 - 1. 구성
 - 가.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연구개발주관부서장으로 한다.
 - 나.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본사 처, 실, 센터 및 지사 현업실무부서의 3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.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 단, 위탁연구용역 및 협력연구과제의 제안서 평가 시에는 사내 위원수(실무위원장 제외)의 동등 또는 이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며, 당해 연구와 관련한 직접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. 심의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있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된 사항은 외부전문가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4> <개정 2021.12.28.> <개정 2023.11.16.>
 - 다. (삭 제) <개정 2023.11.16.>

2. 운영

- 가.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 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.> <개정 2023.11.16.>
- 나.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[별지 제4호 서식] 으로 부의안건,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4.> <개정 2021.12.28.>
 - 1)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
 - 2)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
 - 3)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23.11.16.>
- 다. 실무위원회 부의사항 및 회의록은 [별지 제1호 ~ 제3호 서식]을 활용하여 관리한다. <신설 2019.11.14>
- 라. 위원장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, 미리 지명한 직무대행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0.03.25>

3. 심의사항

- 가. 수시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<개정 2020.03.25>
- 나. 공모연구과제 1차 평가
- 다. 연구과제 중간평가
- 라. 위탁연구용역 제안서 평가
- 마. 기타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바. 협력연구과제의 제안서 평가, 선정 및 최종평가<신설 2020.03.25>
- 사. 협력연구기관 협약해지 및 환수조치 사항<신설 2020.03.25.>
- 제5조의 2 (외부전문가 후보자의 구성) <신설 2022.11.08> ① 외부전문가는 관련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국립 및 사립대학에 조교수 이상의 신분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

- 2. 국책 및 민간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신분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
- 3. 에너지 분야에서 위원 또는 연구원의 직분으로 3년이상 근무 한 자
- 4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, 임용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
- 5. 관련 분야 박사(석사)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(6년)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
- 6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- 7. 기타 위 각목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위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분야별 심의위원 등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- 제5조의 3 (위원의 제착·기피·회피·해촉) <신설 2022.11.08>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(이하 "위원"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부의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② 부의안건의 당사자는 제 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 -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4.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 3 장 조직 및 연구원 관리

제6조(연구개발부서의 신고) 연구개발주관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

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로 신고, 관리 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2.03>

- **제7조(연구원 호칭 및 자격기준)** ① 연구원 호칭은 연구위원, 수석연구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직원이 연구원으로 보직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호칭을 부여한다.

제8조(근무성적평정)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9조(위촉연구원) ① 연구개발 관련 연구전문지식 활용, 비연구성 경력활용, 연구보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위촉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.
 - ② 위촉연구원의 활용은 해당 과제(수탁, 공동 등 외부예산 수반)의 예산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형태의 채용은 제한한다.<개정 2014.12.03>
 - ③ 위촉연구원 자격, 채용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4 장 연구개발비의 관리

제10조(연구개발비의 범위) 연구개발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
- ②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른 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용
-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<개정 2019.11.14>
-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<개정 2019.11.14>
- ⑤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및 경비
- ⑥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
- ⑦ 연구개발을 위한 기자재와 재료를 구매하는 비용
- ⑧ 기타 기술 및 경영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성격의 지출로서 연구개발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
- 제11조(연구개발비의 계상)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우선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사내 관련규정,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" 등 관련 정부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11.14>
 - ②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 다만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28>
 - ③ 위탁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제1항을 준용하되, 다만 특별히 정부의 승인 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.<개정 2019.11.14>
 - ④ 수탁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.
 - 1. 정부수탁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법령 및 위탁기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03>

- 2. 일반수탁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발주기관에서 정한바에 따른다. 다만, 발주기관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변동사업 실행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11.14.>
- ⑤ 협력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은 사내 관련 규정,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" 등 관련 정부규정을 준용한다.<신설 2020.03.25>
- 제12조(연구개발비 집행 보고 및 정산) 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은 매년 보고하고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한다. <개정 2023.11.16.>
 - ② 별도 협약에 의한 집행 및 정산기준이 있는 연구개발비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5 장 연구개발 업무 수행

- 제13조(연구개발업무 계획 수립)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은 차기년도 연구개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 요구하여야 하며, 예산편성주관부서장은 제11조에 의거 이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03>
 - ②(삭 제) <개정 2014.12.03>
 - ③(삭 제) <개정 2014.12.03>

제14조(공동, 위탁, 협력연구기관의 선정) 공동, 위탁, 협력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의 각호 와 같다.<개정 2020.03.25>

- 1.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
- 2.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시설 및 기기의 생산 또는 제조실적이 있는 전문기관
- 3.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
- 4. 협력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·외 대학교, 학회 및 연구기관 등<신설 2020.03.25>
- 5. 과제의 선정절차는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.<신설 2020.03.25>
- 6. 기타 당해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<개정 2020.03.25>

제15조(삭 제) <개정 2014.12.03>

제15조의 2(연구과제의 변경)

- ① 연구과제 시행 전 공사의 경영방침 및 연구과제 수행여건의 변화로 인해 연구과제 수행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심의위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.
- ② 연구수행 중 공사의 경영방침 변화 또는 연구과제 수행여건의 변화로 인해 연구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리지침 [별지 제5호 서식] 시행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14>
- 1. 참여연구원의 변경, 연구비의 증액이 없는 연구비 비목 또는 연구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: 연구개발주관부서장 <개정 2019.11.14>
- 2.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연구비의 증액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 : 연구개발주관부서장
- 3.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연구비의 증액, 목표수정 등 중요한 사항 : 연구개발심의위원장

- 4. 연구과제의 중단, 통폐합 등 중대한 변경 : 연구개발심의위원회
- ③ 연구과제 변경의 중대성 여부는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이 판단한다.
- 제16조(지적재산권 관리 등) ①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결과로 발생되는 공유의 특허권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을 공사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공유의 특허권을 사용 및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공사 자체연구에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의 출원은 연구개발심의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고,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는 그 협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관리한다.<개정 2014.12.03>
 - ④ 연구개발로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보상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. <개정 2019.11.14.>
 - 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의무적으로 임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12.28>
- 제17조(연구문서) ①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은 문서규정 및 보안업무취급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수행 중의 착상, 제반실시 사항, 관련자료 등을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여 연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노트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신설 2014.12.03>

제 6 장 연구개발 발표 및 평가

- 제18조(연구개발발표) ①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중이라도 연구개발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. 다만, 대외 발표 전 지적재산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발표 논문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 개정 2019.11.14>
 - ② 연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 및 보고서 내용을 학회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자는 국내의 경우 10일 이내, 국외의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그 논문 및 보고서 사본을 연구개발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자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 및 보고서 내용을 학회지 및 그밖의 간행물에 게재한 경우에는 논문 및 보고서 사본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1.14> 제19조(연구개발업무의 평가) ① 연구개발업무의 평가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4.12.03>
 - ②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연구개발 평과결과가 미흡하거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.<개정 2020.03.25>
 - 1. 협약 상대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어려울 때 <신설 2020.03.25>
 - 2. 공사 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의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이 발견될 때<신설 2020.03.25>
 - 3. 장기간 연구수행의 정지로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목표를 완수할 수

없다고 판단될 때<신설 2020.03.25>

- 4.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서 이미 개발 또는 유사 기술이 있어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 필요성을 상실할 때<신설 2020.03.25>
- 5. 협약 상대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<신설 2020.03.25>
- 6. 완료평가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조치되지 않았을 때<신설 2020.03.25>
- 7.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기간내에 시정조치되지 않았을 때<신설 2020.03.25>
- 8.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<신설 2020.03.25> ③ 연구개발업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연구원 호칭에 따른 자격기준(제7조 제1항 관련)

호 칭	자격 기준
연구위원	○ 직제규정에 따른 1급 ○ <삭제 2014.11>
수석연구원	○ 직제규정에 따른 2급 ○ <삭제 2014.11>
책임연구원	○ 직제규정에 따른 3급 ○ 직제규정에 따른 4급 중 다음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 - 박사학위(또는 기술사) 취득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 경력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
선임연구원	○ 직제규정에 따른 4급 ○ 직제규정에 따른 5급 중 다음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 - 박사학위(또는 기술사) 취득자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
연구원	ㅇ 직제규정에 따른 6급 이하 직원

비고) 해당분야 경력은 연구경력에 한하며,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3(경력환산기준표)의 가산율을 적용함

[별지 제1호 서식] <신설 2019.11.14>

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부의안건 서식

의안번호	제 호
심 의	2000. 00. 00
년 월 일	(제 회)

심 의 사 항

안 -71	(안 건 명)
건	

제00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 부의 안건

제 안 자	000처장 <i>/</i> 실장 000
제안년월일	20 . 00. 00

- 1. 제안사유
- 2. 의결주문
- 3. 주요 내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나. 예산조치

다. 기타

붙임: 관련문서 1부. 끝.

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의사관리대장

회의 차수	일자	안건 번호	안건명	제안부서	참석위원	의결내용	비고
7.1		<u> </u>					
						원안의결	
					0 0 처 장 성 명 (0	/조건부의결 /수정의	
	0000-00-00		:		급), 00설	결	서 면 결의
					<i>장 성명</i> (0급), ···		
						/부결	

20 년도 제 회 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심의결과

일 시		20xx. 00. 00(월) 00:00 ~ 00:00	장 소				
위원장	참석 위원	00처장 성명, 00실장 성명	출석/ 결석	00명/00명			
ना स् ७	결석 위원	00처장 성명, 00실장 성명	위원	00 3/00 3			
배석자		00실 차장 성명(간사), 00처 과장 성명(제안서 발표자), …					
제안부서		신성장사업실					
안 건 명		제1호 20xx년도 연구개발 공모과제 1 제2호 …	차평가	결과보고			

본문

20xx년도 제00회 (연구개발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에서 제안 부서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소관		<u> </u>	심의결과					
(제안자)	번호							
	제1호							
	제2호							
	•							
	직위	위원	위원	위원	위원			
ما	성명							
의 결	서명							
실 자	직위	위원	위원	위원장				
71	성명							
	서명							
의결일자								
20xx.	00.00	世	사 00층 00회의	실				

제 회 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서면결의서

□ 부의안건 :				
□ 서면결의 사유 :				
위의 안건을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 요청하오니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동의여	부를	해당	란에
	20		월	
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위원	.장			(인)

그ㅂ	구 분 성 명		의채택	안건	채택	a) rel
丁 世			부동의	찬 성	반 대	서명
위원장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위 원	성 명					

- 위 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.
 - 가. 원안의결
 - 나.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
 - 다. 보류
 - 라. 재부의
 - 마. 조건부의결

20 년 월 일

연구개발(심의위원회/실무위원회) 위원장 (인)

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				위 원 명 :	(인)
연번	진	단	내	8	체크사항

연번	진 단 내 용	체크	사항
1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
2	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
3	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()	아니오
4	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)	아니오
5	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시를 받고 있거나 재판·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)	아니오
6	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, 단체,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)	아니오
7	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 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)	아니오

^{* &#}x27;예'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직무윤리 서약서

본인은 연구개발 (심의위원회 / 실무위원회)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
- 2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3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6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7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8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9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위 원 명 : (인)